

#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·벌금·징역 부과기준

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“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”에 있어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해 법조항별로 분류하고,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.

〈참고 1〉 (일쪽)

### 산업재해조사표

관리(산재)번호		사업장명	
사업개시번호		(공사현장, 기사명) ( )	
소재지		근로자수	
업종		생산품	
사업장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원·도급 <input type="checkbox"/> 1차수급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업
안전관리 담당자		안전관리 담당자	
발생 일시	년 월 일	장소	재해발생지역(부서)
인격피해 사망 ( )명	부상 ( )명	병소실비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(상비: )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상
출혈피해	원인   조항별지정	개인보호장비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(장비: )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상
직업활동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수( )명	기인율(재해직인물차출률)	
발생원인   직위별 공중 및 내용			
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			
재발 방지 계획			

\*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, 동일재해로 재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 기재함.

성명	주민등록번호	입사일	년 월 일	통용업무종류기간	년 월
고용 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 <input type="checkbox"/> 양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간제	발생 시점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규직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식사후직 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전	<input type="checkbox"/> 출퇴근	
근무 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속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정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근로 시간	<input type="checkbox"/> 휴일근무 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간외근무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
직업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래	근로 시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태당일 계속작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태당일 작업불가	
발생시 수형 작업과정, 내용	장해종류 (유명상)	장해부위 (발생부위)	기해물		
재해당시 수형 작업과정, 내용					
관계자 확인	사업주 (서명 또는 인)	근로자 대표(재해자)	(서명 또는 인)		

\* 210mm × 297mm(선분용지60g/㎡(재활용품))

〈참고 2〉

### 중재해발생보고서

발 시: 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 
 발 신:        
 수 신:      

- 사업장 개요
 

사업장명	대표자	소재지	근로자수	업종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
- 재해지 인력사항
 

성명	주민번호	소속	직종	입사일	동종경력	재해정도
						사망: ( )명
-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
 

입시	장소	발생취급	기인율
----	----	------	-----

- ◎ 사고결과
- ◎ 재해자에 대한 조치
- ◎ 유가족과의 협의사항
- ◎ 경찰서 조사 받은 내역
  - 조사 받은이
  - 담당 경찰관명

## 1. 보고의무 위반(법 제10조 제1항)

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즉,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사항, 조치 및 전망,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·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가. 조치기준

미 보고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토록 시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범죄인지를 보고 후 수사를 착수하되,



(2) 일부(그 사업장의 업종,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함) 미게시 또는 미비치

#### 나. 조치기준

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.(단,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)

**다. 부과금액** : 위반사항 (1)항은 300만원(과태료), (2)항은 100만원(과태료) 부과

**라. 관계서류** : 산업안전보건법령(법, 영, 규칙, 기준)

### 4. 근로자대표가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11조 제2항)

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-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
- 제20조 제1항, 제2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
- 제36조 제1항, 제41조에 규정된 사항
-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

#### 가. 위반사항

- (1)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
- (2)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
- (3) 법 제20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(제5호 제외)
- (4)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
- (5) 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
- (6)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
- (7)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

#### 나. 조치기준

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.

**다. 부과금액** : 위반사항 (1) · (2)항은 300만원(과태료), (3) · (4)항과 (6) · (7)항은 200만원(과태료), (5)항은 100만원(과태료) 부과

### 5. 안전 · 보건표지 미설치(법 제12조)

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, 비상시 조치의 안내,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 · 보건표식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
### 가. 위반사항

안전·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(1개소당)

### 나. 조치기준

부착장소, 부착내용, 크기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한다.

**다. 부과금액 :** 10만원(과태료) 부과

**라. 관계서류 :** 산업안전보건표지 설치

## 6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-중복선임 포함(법 제13조 제1항)

사업주는 다음 업무를 총괄·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.

-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
-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·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
-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·유지에 관한 사항
- 안전·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- 기타 근로자의 유해·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

### 가. 위반사항


(1)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로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

(2)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로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

### 나. 조치기준

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한다.

**다. 부과금액 :** 위반사항의 (1)항은 300만원(과태료) (2)항은 200만원(과태료) 부과

**라. 관계서류 :**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(참고 4) 

(자료제공 :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 동부출장소 조영수 소장)

〈참고 4〉

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						
① 사업장명	②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		계명	남명	여명	
③ 소재지	(전화· )		④ 근로자수			
구분	내역	⑤ 성명 (기관명)	⑥ 직위 자격	⑦ 선임 일자	⑧ 직위 직책	⑨ 선임-결임 구분
⑩ 안전보건관리책임자				- . .		
⑪ 안전 관리자 (안전관리대행기관)				- . .		
⑫ 보건 관리자 (보건관리대행기관)				- . .		
⑬ 산업보건 의				- . .		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보고인(사업주 또는 대표자)			(서명 또는 인)			
지방노동청(사무소)장 귀하						
첨부서류 1. 자격서면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함.) 2. 제직증명서						

32321-00111호  
99. 4. 1 개정판

210mmX297mm  
(신분용지 54g/m<sup>2</sup> (제용부동))  
© 대한산업안전협회